

특별공급알선 인터넷신청 매뉴얼

【 인터넷 신청은 해당 공고의 신청일 09:00~17:00에 가능합니다.】

1.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geps.or.kr>)에 접속합니다.

2. 화면 하단의 “내연금보기”를 클릭합니다.

재직공무원

**내연금보기
(조회/신청)**

- ☞ 연금대출 신청
- ☞ 대여학자금 국내대학 신청
- ☞ 대여학자금 잔액 조회

- ☞ 연금대출 잔액 조회
- ☞ 대여학자금 해외대학 신청
- ☞ 융자추천서 발급, 잔액 조회




재직자
정보조회


퇴직급여
인터넷신청


퇴직급여
예상액조회


합산신청


군복무기간
산입신청


임대주택
입주신청


주택분양


시장조기전기면접
[시작기간전기면접구]


재해보상
기간연장 신청


재해보상
추가상병 신청


연금교육
신청조회


맞춤형복지신청


임시출산
축하용품 지원


내민원보기


민원신청·발급


서식자료실

연금수급자

**내연금보기
(조회/신청)**

- ☞ 월 연금 지급내역
- ☞ 연금 과세
- ☞ 내민원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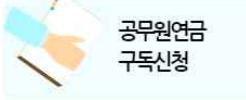
- ☞ 연락처, 계좌번호 변경
- ☞ 연금일부정지금액 산정
- ☞ 민원신청·발급




G-시니어


연금수급자
커뮤니티


은퇴자
공동체마을


공무원연금
구독신청


공무원연금
원고투고


연금수급자
연금교육


서식자료실


제휴복지

4.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일반로그인 합니다. (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)

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정보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.

로그인 설정

로그인

스마트 로그인 | 공인인증서 로그인 | ID/비밀번호 로그인 | 아이핀 로그인

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를
지문(또는 Face ID)과 간편 6자리 비밀번호로 대체하는 서비스로,
공인인증서가 없는 PC에서도 로그인이 가능(공단 앱 지문인증 등록 이용자에 한함)

간편로그인 | 지문인증로그인

5. 고객지원시스템의 상단 메뉴중 '주택/분양/임대 → 주택분양 → 분양신청서 작성' 클릭



6. 분양신청서 작성

분양신청서 작성

단지 선택

분양공고일

모주택서약,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알선대상자 선정처리방법 사전동의

○ 본인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또한 동 주택의 입주시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서약합니다.
○ 무주택기간을 포함한 분양 신청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○ 만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 신청자료와 다르게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첨취소, 계약취소, 주택 기수혜자 등록 등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○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 공단에서 주택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관리되어, 향후 우리 공단의 임대주택에 영구히 입주하실 수 없으며, 우리 공단의 분양주택이나 특별공급암 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순위가 2순위 또는 3순위로 변경됩니다.
○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알선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신청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○ 본인은 이 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 또는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공동이용 대상정보 대상정보: 주민등록등본, 건물등기부등본
*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

의 '무주택서약,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알선대상자 선정처리방법'에 동의합니다.

인터넷 분양신청 메뉴얼을 숙지하였습니까? 숙지하였습니다.

인터넷분양신청메뉴얼

참고

- 단지 항목에서 “신청 대상 단지명”을 선택
- 무주택서약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사항에 “동의합니다”를 선택합니다.
- 착오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분양신청매뉴얼을 필히 숙지하시고 “숙지하였습니다”를 선택합니다.

7. 신청자정보사항 입력(인적사항, 직계존속 부양여부, 신청형)

신청자 정보		※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. (직장 주소 등은 안됩니다.)	
신청인주민번호		신청인 성명	
기관코드		기관명	
접수일자	<input type="button" value=""/>	접수번호	
* 주소	62268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주민번호찾기"/>	
자택전화번호		직장전화번호	
* 휴대전화		이메일 주소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직접입력"/>
직계존속부양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	3자녀 특별공급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
			<input type="radio"/> 신청 주택형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선택"/>

-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주민등록등본상 **3년 이상** 계속 하여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“예”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
다만,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
- 주소는 **주민등록등본상의 현주소지를** 입력하여 주십시오.
(아래쪽 칸에는 상세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)
-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 2개 이상(**휴대폰 번호 및 직장번호** 반드시 입력)을 입력하여 주십시오.
- 신청 주택형 선택 (**※중복신청 불가, 중복신청 시 자동 취소됨.**)

8. 무주택기간 및 재직기간 관련 입력사항

▣ 무주택기간 및 재직기간

혼인신고일자	[] 만30세(생일) 또는 혼인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무택기간 산정		
주택처분일자	[] 입력(변경)된 정보에 대한 최종검토 확정기능 필요		
무주택기간	년	개월	재직기간
			년 개월

※ 기본무주택기간은 신청자연령 만 30세부터 산정한 기간입니다.
※ 기본무주택기간은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.
※ 주택처분사실 입력
- 과거에 주택을 처분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처분일자를 선택하여 주세요.
- 여러 주택을 소유 처분하신 경우 최근의 주택처분일자를 선택합니다.
- 주택처분일자는 처분하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처분으로 인한 "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자"를 의미합니다.
(등기원인일자, 즉 처분(매매) 계약일자 등과 무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 기준임)
(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.)

참고

- 기본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연령 만 30세부터 해당 주택의 '알선공고일'까지의 기간으로 자동 산정됩니다.
※ 최종 무주택기간은 분양신청서 저장 후 신청서출력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.
- 혼인신고일자는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.
※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입력해 주세요.
-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택처분사실이 있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(건축물대장등본은 처리일)을 입력합니다.
(2회 이상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,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한함.)
-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자동산정되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9. 세대원 및 부양가족 입력, 신청완료

■ 부양가족 정보

※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. (직장 주소 등은 안됩니다.)

부양여부				
행추가				
<input type="checkbox"/>	가족관계	주민번호	성명	구분
<input type="checkbox"/>	남편	123456-*****	홍길동	배우자
<input type="checkbox"/>	시부	965432-*****	홍상직	세대원

□ 세대원 및 부양가족 정보

※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)은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.
-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, 배우자의 형제자매(처형, 치제, 형부 등), 동거인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.

※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여 주세요.

- 본인의 직계존속: 신청 공무원 본인의 부모, 신청 공무원 본인의 조부모 등
- 배우자의 직계존속: 배우자의 부모(장인, 장모, 시부, 시모 등)
- 직계비속: 신청 공무원 본인의 자녀

※ 부양가족 인정 기준(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)

-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직계존속이 앞선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(다만, 유주택자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)
-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조건 추가
- 30세 미만 직계비속(기혼자인 직계비속 제외)
-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(기혼자인 직계비속은 제외)

저장 점수확인 신청서출력 취소

참고

-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)은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.

※ 세대원의 범위

세대원(자격검증대상)	비고
• 신청자	
• 신청자의 배우자	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(이하 '분리배우자') 포함
• 신청자의 직계존속 •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	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• 신청자의 직계비속 •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	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•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	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
※ 직계존속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,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필히 입력하여 주십시오.

- 세대원이 있는 경우 "행추가"를 클릭한 다음 세대원을 입력하여 주십시오.
- 세대원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여부를 "예"로 선택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. (미선택으로 인해 점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나, 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.)

※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[별표1])

- 1) 부양가족은 **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**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(신청공무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.)와 **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**으로 한다. 다만, **자녀의 경우 미혼**으로 한정한다.
- 2)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**직계존속**은 신청공무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**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** 계속하여 신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. 다만,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.
- 3) 신청공무원의 **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**은 **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**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.

4. “저장”을 클릭하면 “신청접수”가 완료됩니다.

5. 점수확인 및 신청서출력은 저장 후 가능합니다.

6. “저장(신청접수)”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“취소”를 클릭하여 주십시오.

7. “저장(신청접수)”후 **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수정하신 후** 다시 “저장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.

※ 분양신청서 작성 화면을 나가신 경우, 다시 접속하시어 단지를 선택 하시면 기존에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8. “저장”후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입력사항 및 점수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.